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를 "영 제84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재산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여 이를 제5조 본문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중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로, "취득·관리 및 처분"을 "취득·처분"으로 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하며, "변동이 있을 시는"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로, "전년도 11월 30일까지"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경계획을"로 한다.

제35조중 "취득·처분·교환·대부 및 사용허가"를 "취득·처분 및 교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